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7.3.17] [교육부훈령 제209호, 2017.3.17, 전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취업창업교육지원과), 044-203-6446, 68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대학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2. "사업단"이란 대학에서 LINC+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한다.
3. "대학 지원기구"란 LINC+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단 이외의 대학 내 기구를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5. "사업유형"이란 LINC+ 사업의 목표에 따른 대학별 사업 수행내용을 의미하고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유형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산학협력 고도화형 :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미래사회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6.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이란 채용연계성이 강한 사회맞춤형 교육모델 확산을 위하여 LINC+(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맞춤형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LINC+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10.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란 교수업적평가, 재임용·승진·승급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산학협력 활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수업적평가(성과급)에 산학협력 실적(기술이전, 국내·외 특허 등록, 산업체 연구과제, 현장실습 지도, 기술·경영자문 등)을 반영하거나 교수 재임용, 승진·승급 평가 시 연구실적물을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11. "사회맞춤형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한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전공·트랙 등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2. "성과 미달대학"이란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 미만을 득점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LINC+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LINC+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5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LINC+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장관은 LINC+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현장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교육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LINC+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경제·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5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부 소관 국장,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대학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및 교육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분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 단계 및 종합평가
-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지역산업 및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유관기관,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대학의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주체) ①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총장과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총장과 사업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의 선정

제12조(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학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13조(사업의 신청) LINC+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5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단계·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총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24조·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대학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3. 불법·부정한 방법에 기반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 4.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 6.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기타 대학의 사업성과가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 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대학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총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최종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⑦협약이 해약된 대학의 총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제5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 제18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참여 학사조직은 단과대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은 반드시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②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단은 지역산업 수요 및 대학의 강점분야 등을 고려하여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양성, 지식·기술개발,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과 산업체가 채용약정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이수시 해당 산업체로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대학의 학무위원급 또는 교무위원급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단장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하며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 사업기간 동안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 총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산학협력 추진 관련 조직 운영) ①총장은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단과 연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른 대학별 특화 분야의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전담조직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 내의 관련 자원 및 조직을 총괄 관리한다.

③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전담조직 외 현장실습 분야, 기업지원 분야, 창업지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 관련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1항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제3항에 의한 지원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단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 관련 사업 기획, 운영, 평가, 관리 등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참여교원)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교원은 모두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교원이 연구년에 산업체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③사업단 참여교원의 명단은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참여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22조(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체평가) ①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성과미달대학 판정 및 사업비 조정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년도 사업 종료 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 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종합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총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총장은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협의회 구성)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인건비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기자재 구입·운영비
4. 산학협력 기업 지원비
5.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비
6. 교육환경 개선비
7. 기타 사업운영비
8. 대학사업비

③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
 - 1) 인건비
 - 2)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3) 기자재 구입·운영비
 - 4) 기타사업 운영비
2. 산학협력 기반 구축비
 - 1) 사회맞춤형 협력기반 조성비
 - 2) 현장 기술지원비
 - 3) 교육환경개선비

④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단별 사업비를 조정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의 집행) ①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본부 경비로 이전하여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본부가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③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사업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제32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의 예금이자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결과, 협약이 해약된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8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9조(제재) ①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 편성 항목

구분	내용
인건비 (25% 이내)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 이내를 지원,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을 이하(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 • LINC+사업단, 기업(지역)협업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 장비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포함) ※ LINC+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및 운영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산업연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 융·복합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선순환적 산학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교류강좌(전문가초청 등) 운영 •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글로벌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 창업 동아리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등)
기자재 구입·운영비 (구입, 임차, 리스)	• 산업체 수요 기반의 실습 장비(H/W, S/W)구축 • 산학협력 및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산학협력 기업지원비	• 지역사회 및 기업 맞춤형 지원비 •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 •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지원 • 애로기술(기술, 경영, 디자인 등) 및 컨설팅 지원 •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등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R&BD) 비용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등) • 산학공동기술(지식)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등 •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비용 • 대학(원)생 기술(지식)창업 프로젝트 비용
교육환경 개선비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험실 집적화 등 환경 및 시설 개선 등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
기타 사업운영비 (5% 이내)	• LINC+사업단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및 지원 경비 •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간 연계 협력 추진 비용 등 •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대학사업비 (20% 이내)	• 비LINC+ 대학 및 비참여학과 산학협력 체제 공유·확산 • 대학 조직 간 유기적 산학협력 체제 마련 •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여건 및 대학체질 개선을 위한 공동 인프라 마련 등 ※ 대학(원)생 진로·취업·창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운영

[별표2]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예산 편성 항목

구분		내용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 사회맞춤형 기업전문 교수 인건비 • 사업단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사회맞춤형학과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교재 개발비 • 산업체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강사 초청 및 운영 •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사회맞춤형 취업 역량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구입, 임차, 리스)	• 산업체 수요 기반의 현장 미러(mirror)형 실습 장비(H/W, S/W)구축 •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습재료,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기타사업 운영비	•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산학협력 기반 구축비	사회맞춤형 협력기반 조성비	• 취업약정 기업체 발굴 및 협력 활동비 • 산업체-대학 공동협력 협의체 운영,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산업체-대학 연계 서비스 지원 등 • 대학, 산학협력단의 사회맞춤형 LINC+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지원 경비
	현장 기술지원비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 현장 문제해결(R&BD) 비용 • 산업체-대학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관리 비용 등
	교육환경 개선비	• 현장 미러(mirror)형 교육 및 실습·연구 환경 집적화 등 시설 개선 비용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